

● **환경부령 제916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08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있고,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상 관련 교육 실적이 있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제17조의 제목 “(기상현상의 증명 등)”을 “(기상현상의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을 “증명에 대한”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한”을 “대한”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상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사항	기상정보의 종류	기간
	기상요소	
	관측지점(지역)	
	용도	자료종류 및 발급부수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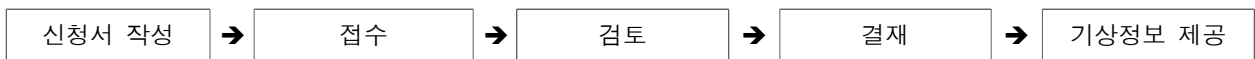
기상청장
대행하는 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	----------------------------

수수료 납부 방법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기상청 또는 대행하는 자 (기상정보제공 담당부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정보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이용자가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의 제공과 중복되는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신규 기관·단체에도 교육기관의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기상 관련 교육 실적 요건을 제외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